

<붙임>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결과

2022.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 가 실 평 가 4부

목 차

I .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결과 1

1. 평가개요
2. 평가결과
3.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4.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방안

II. 향후 추진계획 28

<붙임> 1.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붙임> 2. 시도별·종별 평가등급 현황

I. 2021년(1차) 우울증 걱정성 평가 결과

1. 평가개요

가. 평가배경 및 목적

- 우울증 유병률은 5.6%¹⁾로 높고, 사회적 편견 및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자살²⁾ 등의 정신보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우울증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요구 증대
- 근거 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 지속성 향상을 위해 걱정성 평가 실시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18.1.)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보건복지부) 발표
- ('18.6.~'19.2.) 「우울증 외래 진료의 걱정성 평가 방안 마련」 연구 수행
- ('19.1.~'11.) 우울증 외래 예비평가 실시
- ('20.2.) 예비평가 결과 및 본 평가계획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20.4.~'5.) 평가대상 및 지표 등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시행
- ('20.7.)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걱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20.9.)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걱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및 요양기관 설명회
- ('22.1.~'8.) 전문가 자문 및 평가결과 산출
- ('22.5.~'9.)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걱정성 평가 분과위원회 심의(3회)
- ('22.10.) 1차 평가결과 및 2차 평가계획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의결

1)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2017.

2)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6명 (OECD 평균: 11.7명), OECD. Health and glance 2019.

다. 평가대상

- 대상기간 : 2021년 1월 ~ 6월 (6개월) 진료분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한방, 치과 제외)
※ 평가대상 15명 미만 의료기관 제외
- 대상환자 :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의 조작적 정의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우울증 상병으로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 세부 평가대상

- (상병 코드)

- F32 우울에피소드*
 - F33 재발성 우울장애*
 - F38 기타 기분[정동]장애*
 - F39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 F341 기분이상(지속성 우울장애)
 - F348 기타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F349 상세불명의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F412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 상병 하위 코드 포함

- (상병 범위) 주상병 ~ 부상병 2번째까지

- (제외 환자)

- 평가대상기간 내 우울증 입원이 있는 우울증 외래환자^{주1)}
- 조현병(F20~F28)·조증(F30)·양극성장애(F31)로 입원·외래 우울증 환자^{주2)}
- 상세불명의 비기질성정신병(F29, 주상병만) 입원·외래 우울증 환자^{주2)}
- 2개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회송이 발생한 우울증 외래환자^{주3)}
- 평가대상기간 내 사망환자^{주4)}

주 1) 우울증,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는 정신건강 입원영역에 포함되어 적정성평가 중임

주2) 우울증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와 조현병·조증·양극성장애 병력이 있는 우울증 환자는
환자 특성 및 진료 행태가 상이하어 제외함

주3) 환자 요인 등에 의한 평가지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함

주4) 평가결과의 안정적 산출과 신뢰성 제고를 위함

라.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 총 6개 지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2개)

구분		지 표 명
평가지표	과정	[지표1]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을
		[지표2]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을
		[지표3]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지표4]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모니터링 지표	과정	[지표5]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지표6]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 [붙임 1]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참조

○ 평가자료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 평가 대상기간: 2021년 1월 ~ 6월 (6개월) 진료분

· 분석 대상기간*: 2021년 1월 ~ 2022년 2월 (14개월) 진료분

※ 평가대상 6개월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한 지표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지표 등) 분석 기간

-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 평가방법

- 평가지표별 전체 및 종별, 기관별 결과 산출

- 평가지표 결과 종합화, 요양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 모니터링지표는 종합점수 산출에서 제외

마. 평가대상 현황

□ 일반 현황

- 평가대상 기관은 총 **4,224개소**, 환자는 약 **48만 명**, 청구 건은 약 258만건, 총 진료비는 약 1,396억 원임
- 의원이 기관수(79.9%), 환자수(77.3%) 및 청구건수(83.5%)가 가장 많음

〈표 1 : 종별 평가대상 현황〉

(단위: 개소, 명, 천 건, 백만 원, %)

구분	기관 수		환자 수		청구 건		총 진료비	
계	4,224	(100.0)	483,078	(100.0)	2,575	(100.0)	139,637	(100.0)
상급종합	45	(1.1)	12,760	(2.6)	54	(2.1)	4,579	(3.4)
종합병원	290	(6.8)	57,831	(12.0)	213	(8.3)	12,769	(9.1)
병원	328	(7.8)	21,506	(4.5)	70	(2.7)	3,260	(2.3)
요양병원	19	(0.4)	579	(0.1)	2	(0.1)	89	(0.1)
정신병원	168	(4.0)	16,988	(3.5)	84	(3.3)	5,078	(3.6)
의원 ^{주)}	3,374	(79.9)	373,414	(77.3)	2,150	(83.5)	113,860	(81.5)

주) 정신건강의학과 1,391개소 41.2% 차지, 이외 진료과 1,983개소 58.8% 차지

□ 성별 및 연령별 현황

- 성별 현황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는 남자(36.0%)보다 여자(64.0%)가 많음
- 연령별 현황
 - 연령대별로는 60대(18.6%) > 50대(16.2%) > 20대(14.4%) 순으로 나타남

〈표 2 : 성별 · 연령별 청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환자 수 전체		환자 수			
				남		여	
계		483,078	(100)	173,978	(36.0)	309,100	(64.0)
연령대별	18 ~19세	9,267	(1.9)	3,955	(42.7)	5,312	(57.3)
	20 ~ 29세	69,511	(14.4)	25,499	(36.7)	44,012	(63.3)
	30 ~ 39세	61,855	(12.8)	24,485	(39.6)	37,370	(60.4)
	40 ~ 49세	66,776	(13.8)	26,727	(40.0)	40,049	(60.0)
	50 ~ 59세	78,305	(16.2)	28,359	(36.2)	49,946	(63.8)
	60 ~ 69세	89,658	(18.6)	30,530	(34.1)	59,128	(65.9)
	70 ~ 79세	68,867	(14.3)	23,150	(33.6)	45,717	(66.4)
	80 ~ 89세	35,293	(7.3)	10,505	(29.8)	24,788	(70.2)
	90세 이상	3,546	(0.7)	768	(21.7)	2,778	(78.3)

□ 상병 현황

○ 우울증 상병 청구현황(10순위)

-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F329)'가 전체의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 : 우울증 상병 청구 현황(전체)〉

(단위: 명, %)

순위	상병코드 및 명칭		전체		진료과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진료과	
전체			483,078	(100.0)	291,546	(100.0)	191,532	(100.0)
1	F329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164,375	(34.0)	95,178	(32.6)	69,197	(53.3)
2	F412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88,827	(18.4)	49,912	(17.1)	38,915	(23.0)
3	F320	경도 우울에피소드	82,861	(17.2)	57,652	(19.8)	25,209	(9.5)
4	F321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42,613	(8.8)	39,579	(13.6)	3,034	(2.0)
5	F328	기타 우울에피소드	26,504	(5.5)	14,279	(4.9)	12,225	(6.4)
6	F39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15,779	(3.3)	2,597	(0.9)	13,182	(1.2)
7	F341	기분이상	15,432	(3.2)	10,122	(3.5)	5,310	(1.5)
8	F380	기타 단일기분[정동]장애	10,813	(2.2)	613	(0.2)	10,200	(0.8)
9	F322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9,533	(2.0)	8,291	(2.8)	1,242	(0.4)
10	F388	기타 명시된 기분[정동]장애	6,149	(1.3)	667	(0.2)	5,482	(0.3)

○ 정신건강의학과 주상병 현황(3단위)

-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의 주상병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우울에피소드(F32)가 47.0%로 가장 많음

〈표 4 : 정신건강의학과 주상병 현황(상위 10순위)〉

(단위: 명, %)

(단위: 명, %)

순위	상병코드 및 명칭		환자 수	
전체			291,549	(100.0)
상위 10위 소계			273,628	(93.9)
1	F32	우울에 피소드	137050	(47.0)
2	F41	기타 불안장애	66056	(22.7)
3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19075	(6.5)
4	F51	비기질성 수면장애	18054	(6.2)
5	F33	재발성 우울장애	8401	(2.9)
6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8192	(2.8)
7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5638	(1.9)
8	F10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4352	(1.5)
9	F45	신체형장애	3722	(1.3)
10	F40	공포성 불안장애	2948	(1.0)

○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진료과의 주상병 현황(3단위)

-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의 주상병은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진료과에서는 위식도역류병(K21)이 7.2%로 가장 많음

〈표 5 :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과 주상병 현황(상위 10순위)〉

			(단위: 명, %)	
순위		상병코드 및 명칭	환자 수	
전체			191,533	(100.0)
상위 10위 소계			81,124	(42.4)
1	K21	위-식도역류병	13,815	(7.2)
2	F32	우울에 피소드	12,085	(6.3)
3	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9,264	(4.8)
4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8,041	(4.2)
5	F41	기타 불안장애	8,891	(4.6)
6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6,958	(3.6)
7	H81	전정기능의 장애	6,888	(3.6)
8	G47	수면장애	6,474	(3.4)
9	R51	두통	4,517	(2.4)
10	G44	기타 두통증후군	4,191	(2.2)

□ 진료과별 현황

○ 정신건강의학과 60.4%,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진료과 39.6%임

- 정신건강의학과 이외 진료과에서는 내과(13.0%), 신경과(10.8%) 순임

〈표 6 : 진료과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평가대상		종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합계		483,078	(100.0)	12,760 (100.0)	57,831 (100.0)	21,506 (100.0)	579 (100.0)	16,988 (100.0)	373,414 (100.0)
정신건강의학과		291,546	(60.4)	5,030 (39.4)	19,510 (33.7)	3,027 (14.1)	182 (31.4)	16,950 (99.8)	246,847 (66.1)
이 외 진 료 과	소계	191,532	(39.6)	7,730 (60.6)	38,321 (66.3)	18,479 (85.9)	397 (68.6)	38 (0.2)	126,567 (33.9)
	내과	62,568	(13.0)	1,529 (12.0)	6,771 (11.7)	5,718 (26.6)	28 (4.8)	20 (0.1)	48,502 (13.0)
	신경과	52,113	(10.8)	3,487 (27.3)	23,335 (40.3)	6,303 (29.3)	217 (37.5)	3 (0.0)	18,768 (5.0)
	일반의	28,853	(6.0)	1 (0.0)	— (—)	22 (0.1)	— (—)	— (—)	28,830 (7.7)
	신경외과	9,892	(2.0)	304 (2.4)	2,946 (5.1)	2,820 (13.1)	17 (2.9)	— (—)	3,805 (1.0)
	이비인후과	9,098	(1.9)	396 (3.1)	1,466 (2.5)	221 (1.0)	— (—)	— (—)	7,015 (1.9)
	정형외과	8,304	(1.7)	359 (2.8)	1,154 (2.0)	1,610 (7.5)	11 (1.9)	3 (0.0)	5,167 (1.4)
	가정의학과	6,159	(1.3)	347 (2.7)	575 (1.0)	521 (2.4)	24 (4.1)	11 (0.1)	4,681 (1.3)
	마취통증의학과	3,265	(0.7)	189 (1.5)	188 (0.3)	154 (0.7)	— (—)	— (—)	2,734 (0.7)
	기타계	11,280	(2.3)	1,118 (8.8)	1,886 (3.3)	1,110 (5.2)	100 (17.3)	1 (0.0)	7,065 (1.9)

주) ‘—’ 은 값 없음

□ 항우울제 처방 현황

- 항우울제는 전체 청구건의 74.4%로 SSRI계열의 Escitalopram이 40.1%로 가장 많음

〈표 7 : 항우울제 성분별 처방 전체 현황(상위 10순위)〉

(단위: 천 건, %)

순위	계열	성분명	청구 건	
평가대상 전체			2,575	(100)
항우울제 청구명세서 합계			1,915	(74.4)
1	SSRI	Escitalopram	768	(40.1)
2	SSRI	Fluoxetine	203	(10.6)
3	SSRI	Sertraline	158	(8.3)
4	기타	Tianeptine	142	(7.4)
5	SSRI	Paroxetine	140	(7.4)
6	기타	Trazodone	100	(5.2)
7	TCAs	Amitriptyline	73	(3.8)
8	기타	Vortioxetine	47	(2.5)
9	TCAs	Nortriptyline	46	(2.4)
10	SNRIs	Desvenlafaxine	42	(2.2)
11이하	이 외 기타 항우울제 계		192	(10.0)

2. 평가결과

가. 평가결과 요약

○ 평가지표

- 예비평가 대비 모든 지표의 결과값 증가하였으나, 각 지표별 평균값은 21.5~ 39.4%로 낮고 종별 변이 크게 나타남
- (재방문 관련)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은 각각 39.4%, 21.5%로 예비평가 대비 8.1%p, 7.2%p 증가함
- (평가지행 관련) 우울증상 초기평가, 재평가 시행률은 각각 31.4%, 22.6%로 예비평가 대비 17.6%p, 15.8%p 증가함

○ 모니터링지표

- (항우울제 처방 지속률 관련) 84일 이상, 180일 이상 처방 지속율은 각각 25.8%, 16.4%로 예비평가 대비 2.9%p, 2.0%p 증가함

〈표 8 : 평가결과 요약〉

(단위: %, %p)

구분	지표명	예비 (A)	1차 결과							증감 (B-A)
			전체 (B)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주)}	요양 병원 ^{주)}	정신 병원 ^{주)}	의원	
평가 지표 (과정 4)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31.3	39.4	23.6	24.5	19.2	18.1	44.5	43.2	8.1▲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14.3	21.5	10.2	8.6	4.8	4.1	22.4	24.9	7.2▲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13.8	31.4	24.3	20.1	9.0	12.8	34.1	34.6	17.6▲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6.8	22.6	47.3	20.8	3.0	1.4	8.4	23.1	15.8▲
모니 터링 지표 (과정 2)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22.9	25.8	56.6	32.9	17.4	30.7	29.4	24.2	2.9▲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14.4	16.4	40.8	22.5	11.4	24.6	17.7	15.0	2.0▲

주) 정신병원 종별 신설(의료법 개정, 21.3.5 시행)

나. 평가지표 결과

[지표 1]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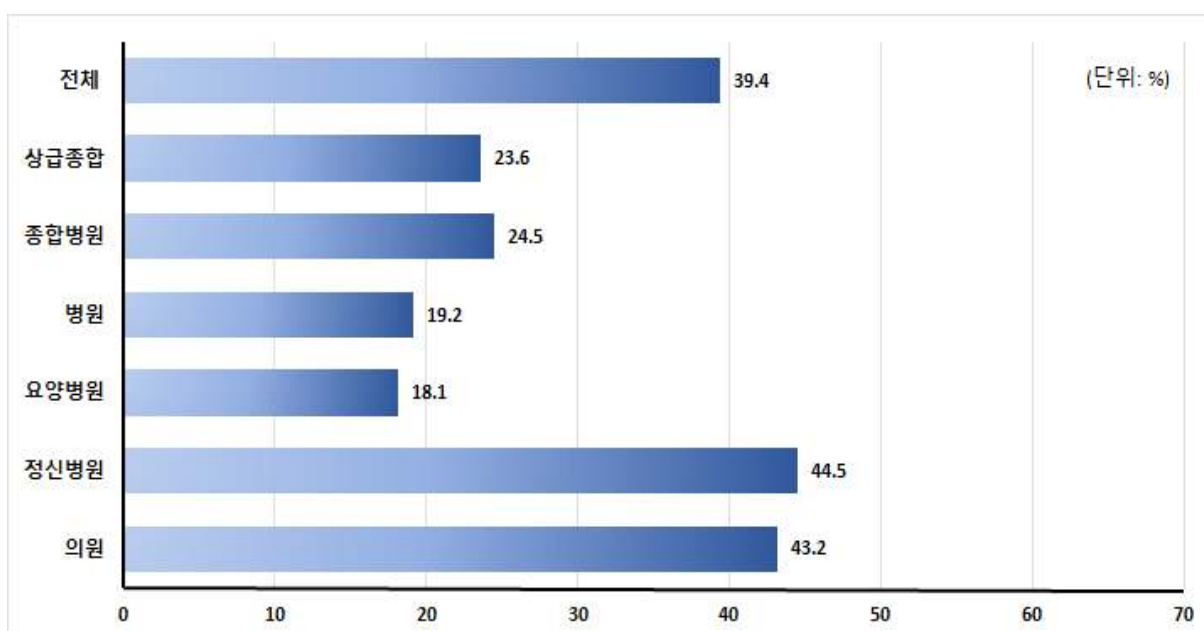
정의	첫 방문* 후 3주 이내 외래에 재방문**한 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 비율
산출식	$\frac{\text{첫 방문 후 3주 이내에 외래 재방문한 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 수}}{\text{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 수}} \times 100$ * (첫 방문) 우울증 상병으로 평가대상 기간 내 처음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재방문) 첫 방문 다음일부터 3주(21일) 이내 우울증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 외래를 방문하여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이 이루어진 경우

-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은 전체 39.4%(예비평가 : 31.3%)임
- 정신병원(44.5%) > 의원(43.2%) > 종합병원(24.5%) 순으로 높음

<표 9 :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구분	평가대상		재방문 시행 ^{주)}		재방문율
	기관	환자 수	기관	환자 수	
전체	4,224	483,078	3,738	190,360	39.4
상급종합	45	12,760	45	3,009	23.6
종합병원	290	57,831	285	14,149	24.5
병원	328	21,506	301	4,134	19.2
요양병원	19	579	17	105	18.1
정신병원	168	16,988	168	7,565	44.5
의원	3,374	373,414	2,922	161,398	43.2

주) 재방문은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하여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을 시행한 경우



<그림 1: 첫 방문 3주 이내 재방문율>

○ 기관별 평균은 31.5%이며 중앙값은 26.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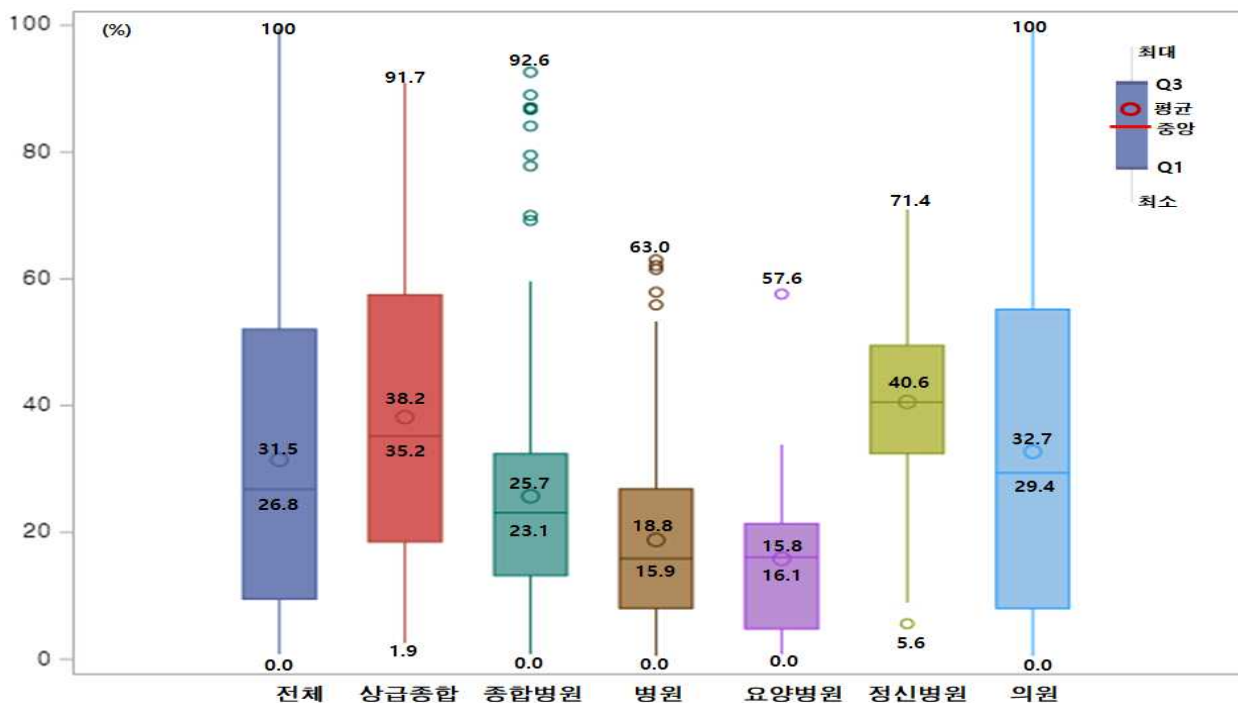
- 평균은 정신병원(40.6%) > 상급종합병원(38.2%) > 의원(32.7%) 순으로 높으며, 표준편차는 의원($\pm 25.7\%$)이 가장 큼

<표 10 :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률 기관별 분포>

(단위: 개소, 명, %)

구분	평가대상		재방문 시행 ^{주)}		재방문을 기관별 분포						
	기관	환자수	기관	환자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Q1	중앙값	Q3	최댓값
전체	4,224	483,078	3,738	190,360	31.5	24.4	0.0	9.5	26.8	52.1	100.0
상급종합	45	12,760	45	3,009	38.2	22.9	1.9	18.5	35.2	57.5	91.7
종합병원	290	57,831	285	14,149	25.7	17.5	0.0	13.2	23.1	32.4	92.6
병원	328	21,506	301	4,134	18.8	13.9	0.0	8.1	15.9	26.9	63.0
요양병원	19	579	17	105	15.8	13.7	0.0	4.8	16.1	21.4	57.6
정신병원	168	16,988	168	7,565	40.6	12.3	5.6	32.5	40.6	49.5	71.4
의원	3,374	373,414	2,922	161,398	32.7	25.7	0.0	8.0	29.4	55.2	100.0

주) 재방문은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하여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을 시행한 경우



<그림 2 :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을 기관별 분포>

[지표 2]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정의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외래에 방문한 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 비율
산출식	$\frac{\text{첫 방문 후 8주 이내에 3회 이상 외래 방문한 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 수}}{\text{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 수}} \times 100$ * (첫 방문) 우울증 상병으로 평가대상 기간 내 처음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3회 이상 방문) 첫 방문 다음날부터 8주(56일) 이내 우울증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이 이루어진 외래 방문이 3회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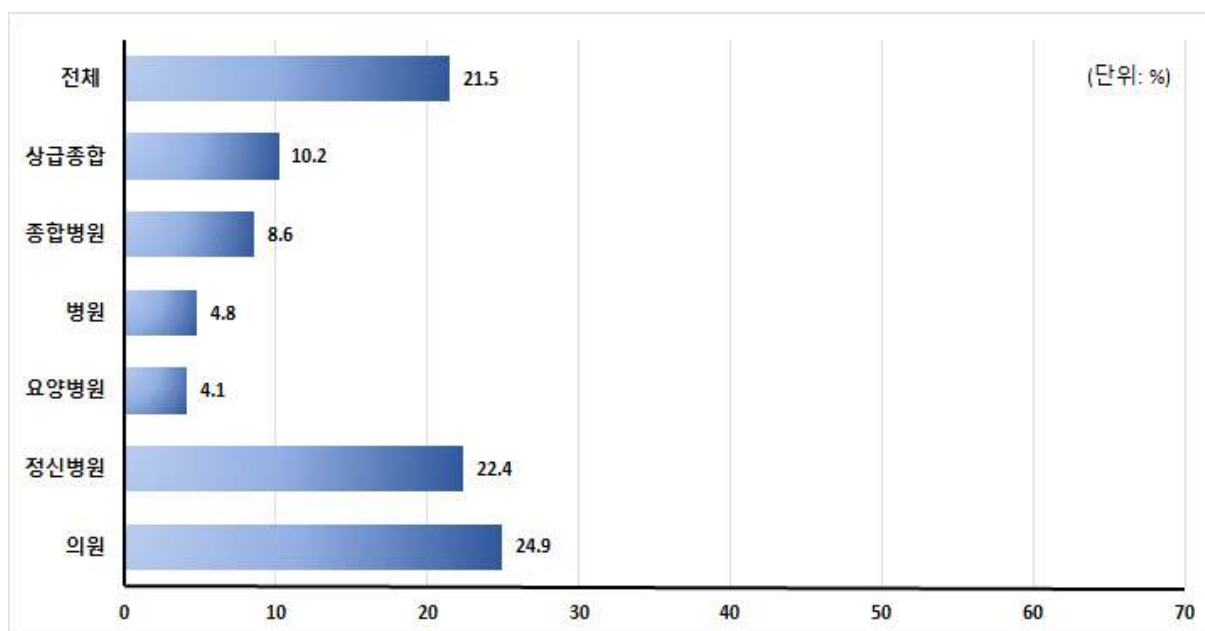
○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은 전체 21.5%(예비평가 : 14.3%)임
- 의원(24.9%) > 정신병원(22.4%) > 상급종합병원(10.2%) 순으로 높음

<표 11 :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단위: 개소, 명, %)

구분	평가대상		재방문 시행 ^{주)}		3회 이상 방문율
	기관	환자 수	기관	환자 수	
전체	4,224	483,078	3,106	104,052	21.5
상급종합	45	12,760	44	1,307	10.2
종합병원	290	57,831	248	5,001	8.6
병원	328	21,506	209	1,025	4.8
요양병원	19	579	8	24	4.1
정신병원	168	16,988	161	3,801	22.4
의원	3,374	373,414	2,436	92,894	24.9

주) 3회 이상 방문은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을 시행한 경우



<그림 3: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 기관별 평균은 16.2%이며 중앙값은 7.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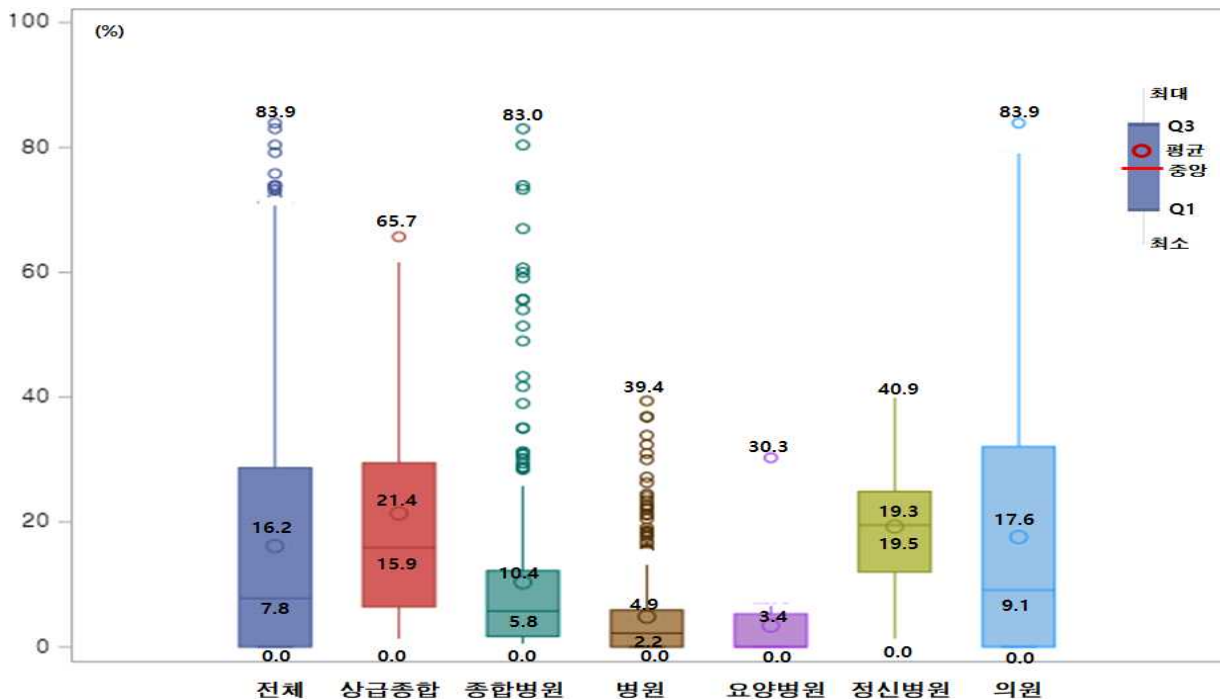
- 평균은 상급종합병원의원(21.4%) > 정신병원(19.3%) > 의원(17.6%) 순으로 높으며, 표준편차는 의원($\pm 19.0\%$)이 가장 큼

<표 12 :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을 기관별 분포>

(단위: 개소, 명, %)

구분	평가대상		3회 이상 방문 시행 ^{주)}		3회 이상 방문을 기관별 분포						
	기관	환자수	기관	환자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Q1	중앙값	Q3	최댓값
전체	4,224	483,078	3,106	104,052	16.2	18.1	0.0	0.0	7.8	28.7	83.9
상급종합	45	12,760	44	1,307	21.4	18.4	0.0	6.4	15.9	29.5	65.7
종합병원	290	57,831	248	5,001	10.4	14.4	0.0	1.7	5.8	12.2	83.0
병원	328	21,506	209	1,025	4.9	7.2	0.0	0.0	2.2	5.9	39.4
요양병원	19	579	8	24	3.4	7.0	0.0	0.0	0.0	5.3	30.3
정신병원	168	16,988	161	3,801	19.3	9.9	0.0	12.0	19.5	24.9	40.9
의원	3,374	373,414	2,436	92,894	17.6	19.0	0.0	0.0	9.1	32.1	83.9

주) 3회 이상 방문은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을 시행한 경우



<그림 4 :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을 기관별 분포>

[지표 3]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정의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산출식	$\frac{\text{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text{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 수}} \times 100$ * (초기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외래 첫 방문한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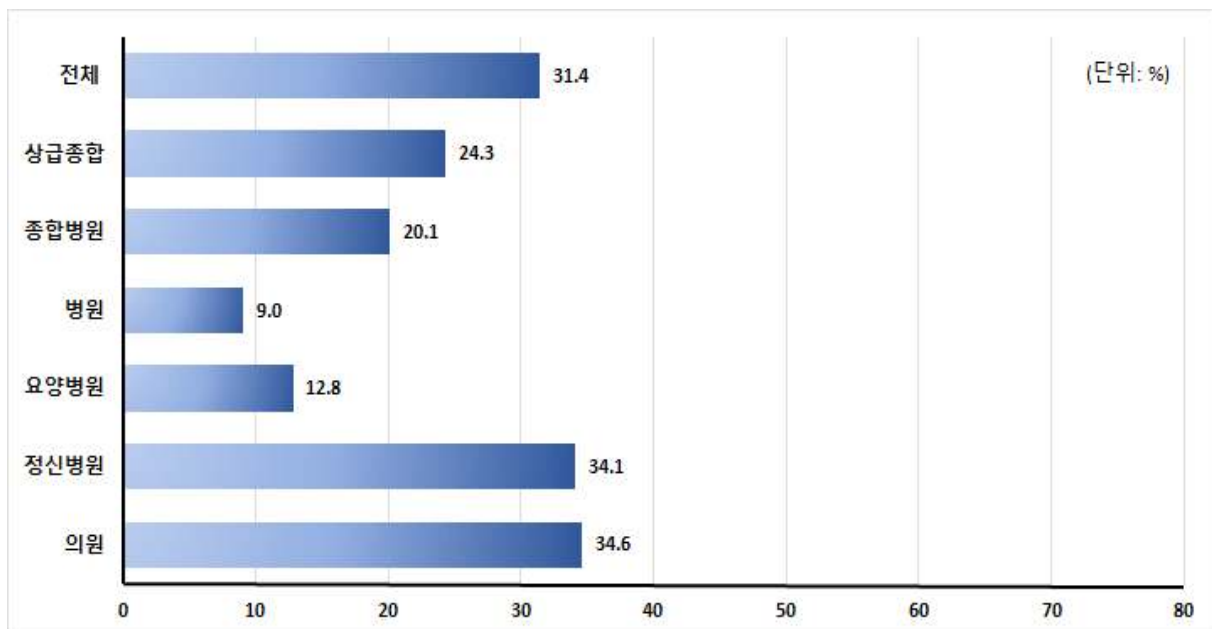
-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은 전체 31.4%(예비평가 : 13.8%)임
- 의원(34.6%) > 정신병원(34.1%) > 상급종합병원(24.3%) 순으로 높음

〈표 13 :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단위: 개소, 명, %)

구분	평가대상		초기평가 시행 ^{주)}		초기평가 시행률
	기관	환자 수	기관	환자 수	
전체	4,224	483,078	1,799	151,759	31.4
상급종합	45	12,760	45	3,107	24.3
종합병원	290	57,831	241	11,637	20.1
병원	328	21,506	109	1,930	9.0
요양병원	19	579	8	74	12.8
정신병원	168	16,988	122	5,789	34.1
의원	3,374	373,414	1,274	129,222	34.6

주) 초기(첫 방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 1회 이상 평가한 경우.[붙임1]참조



〈그림 5 :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 기관별 평균은 21.2%이며 중앙값은 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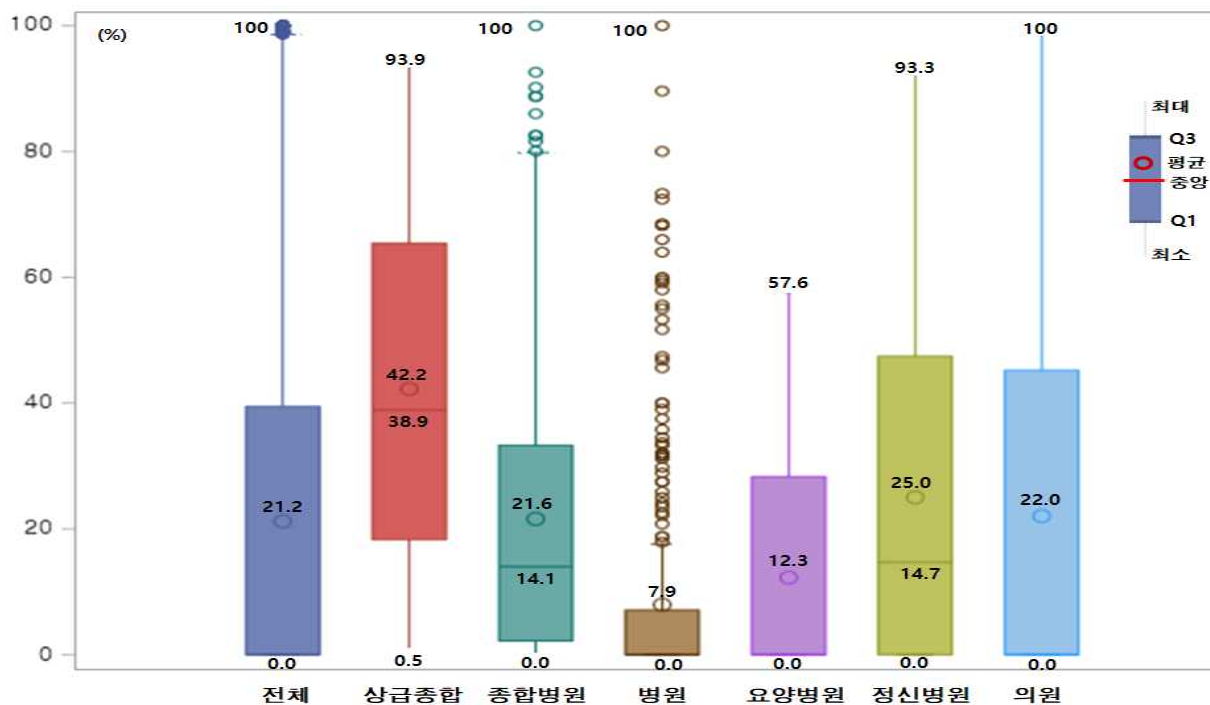
- 평균은 상급종합병원(42.2%) > 정신병원(25.0%) > 의원(22.0%) 순으로 높으며, 표준편차는 의원($\pm 34.0\%$)이 가장 큼

〈표 14 :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기관별 분포〉

(단위: 개소, 명, %)

구분	평가대상		초기평가 시행 ^{주)}		초기평가 시행률 기관별 분포						
	기관	환자수	기관	환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Q1	중앙값	Q3	최댓값
전체	4,224	483,078	1,799	151,759	21.2	32.2	0.0	0.0	0.0	39.5	100.0
상급종합	45	12,760	45	3,107	42.2	27.5	0.5	18.3	38.9	65.4	93.9
종합병원	290	57,831	241	11,637	21.6	23.1	0.0	2.2	14.1	33.3	100.0
병원	328	21,506	109	1,930	7.9	17.0	0.0	0.0	0.0	7.1	100.0
요양병원	19	579	8	74	12.3	18.1	0.0	0.0	0.0	28.3	57.6
정신병원	168	16,988	122	5,789	25.0	27.0	0.0	0.0	14.7	47.5	93.3
의원	3,374	373,414	1,274	129,222	22.0	34.0	0.0	0.0	0.0	45.2	100.0

주) 초기(첫 방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 1회 이상 평가한 경우.[붙임1]참조



〈그림 6 :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기관별 분포〉

[지표 4]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정의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 후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산출식	$\frac{\text{분모 대상 중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환자 수}}{\text{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times 100$ * (초기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외래 첫 방문한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 ** (재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초기평가 한 날부터 2주 이후(15일) ~ 첫 방문한 날부터 4개월(120일) 이내

○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은 전체 22.6%(예비평가 : 6.8%)임

- 상급종합병원(47.3%) > 의원(23.1%) > 종합병원(20.8%)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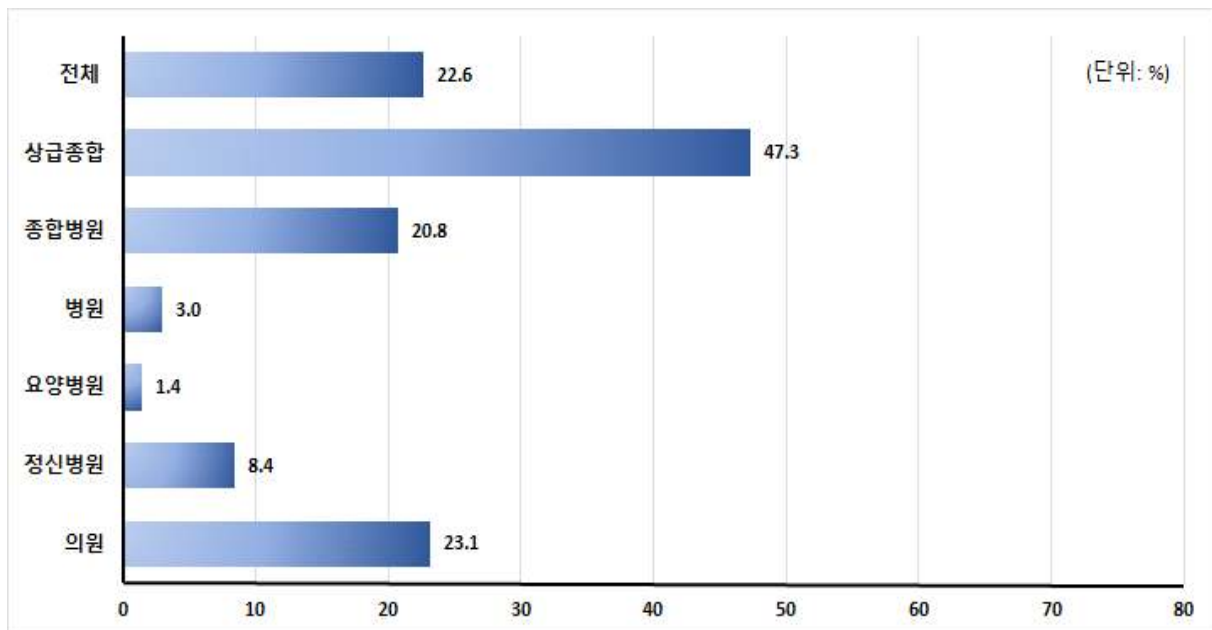
<표 15 :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단위: 개소, 명, %)

구분	초기평가 대상 ¹⁾		재평가 시행 ²⁾		재평가 시행률
	기관	환자 수	기관	환자 수	
전체	1,799	151,759	1,003	34,331	22.6
상급종합	45	3,107	44	1,470	47.3
종합병원	241	11,637	125	2,421	20.8
병원	109	1,930	20	57	3.0
요양병원	8	74	1	1	1.4
정신병원	122	5,789	55	486	8.4
의원	1,274	129,222	758	29,896	23.1

주) 1.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중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 환자 수

2. 재평가는 우울증 상병으로 초기평가 한 날부터 2주 이후(15일) ~ 첫 방문한 날부터 4개월(120일) 이내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 1회 이상 평가한 경우.[붙임1]참조



<그림 7 :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 기관별 평균은 16.4%이며 중앙값은 2.0%임

- 상급종합병원(48.2%) > 의원(17.7%) > 종합병원(15.6%) 순으로 높으며,
표준편차는 상급종합병원(±26.1%)이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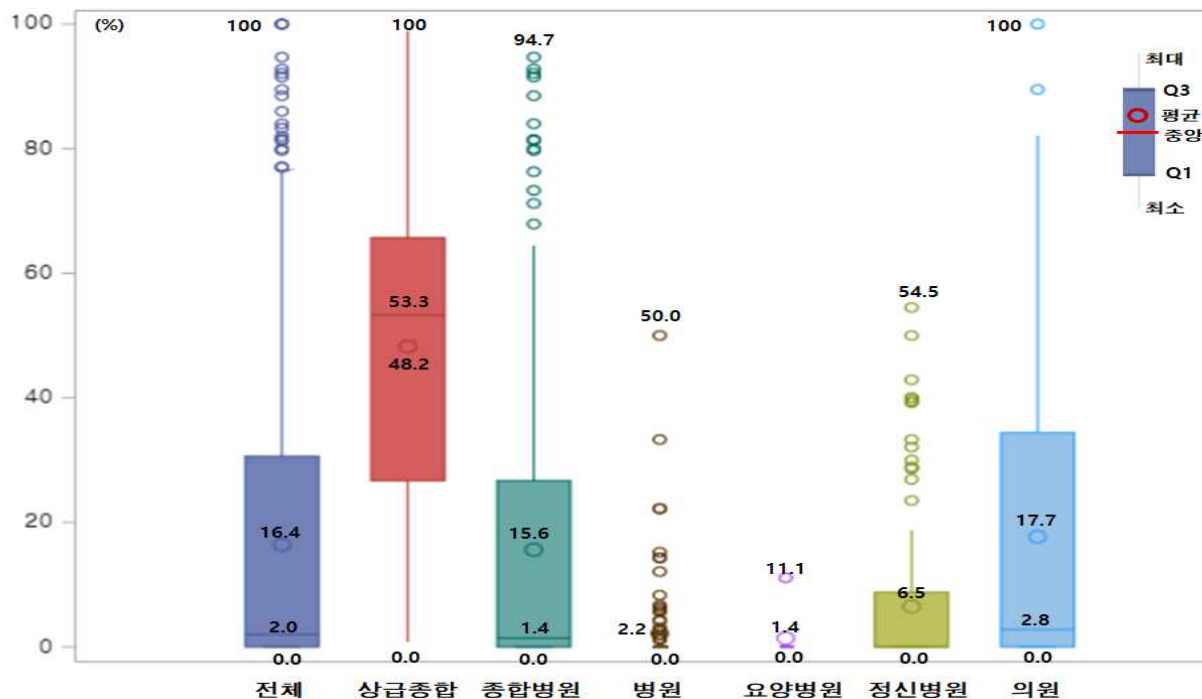
〈표 16 :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기관별 분포〉

(단위: 개소, 명, %)

구분	초기평가 대상 ¹⁾		재평가 시행 ²⁾		재평가 시행률 기관별 분포						
	기관	환자수	기관	환자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Q1	중앙값	Q3	최댓값
전체	1,799	151,759	1,003	34,331	16.4	23.2	0.0	0.0	2.0	30.6	100.0
상급종합	45	3,107	44	1,470	48.2	26.1	0.0	26.7	53.3	65.7	100.0
종합병원	241	11,637	125	2,421	15.6	24.1	0.0	0.0	1.4	26.7	94.7
병원	109	1,930	20	57	2.2	6.9	0.0	0.0	0.0	0.0	50.0
요양병원	8	74	1	1	1.4	3.9	0.0	0.0	0.0	0.0	11.1
정신병원	122	5,789	55	486	6.5	12.1	0.0	0.0	0.0	8.8	54.5
의원	1,274	129,222	758	29,896	17.7	23.3	0.0	0.0	2.8	34.4	100.0

주) 1.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중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 환자 수

2. 재평가는 우울증 상병으로 초기평가 한 날부터 2주 이후(15일) ~ 첫 방문한 날부터 4개월(120일) 이내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 1회 이상 평가한 경우.[붙임1]참조



〈그림 8 :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기관별 분포〉

다. 모니터링지표 결과

[지표 5]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정의	항우울제를 84일 이상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 비율
산출식	$\frac{84\text{일 이상 항우울제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수}}{\text{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수}} \times 100$ * (항우울제 84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날로부터 114일 이내(총115일 동안)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투여일수 합이 84일(12주 이상)

○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은 전체 25.8%(예비평가 : 22.9%)임

- 상급종합병원(56.6%) > 종합병원(32.9%) > 요양병원(30.7%) >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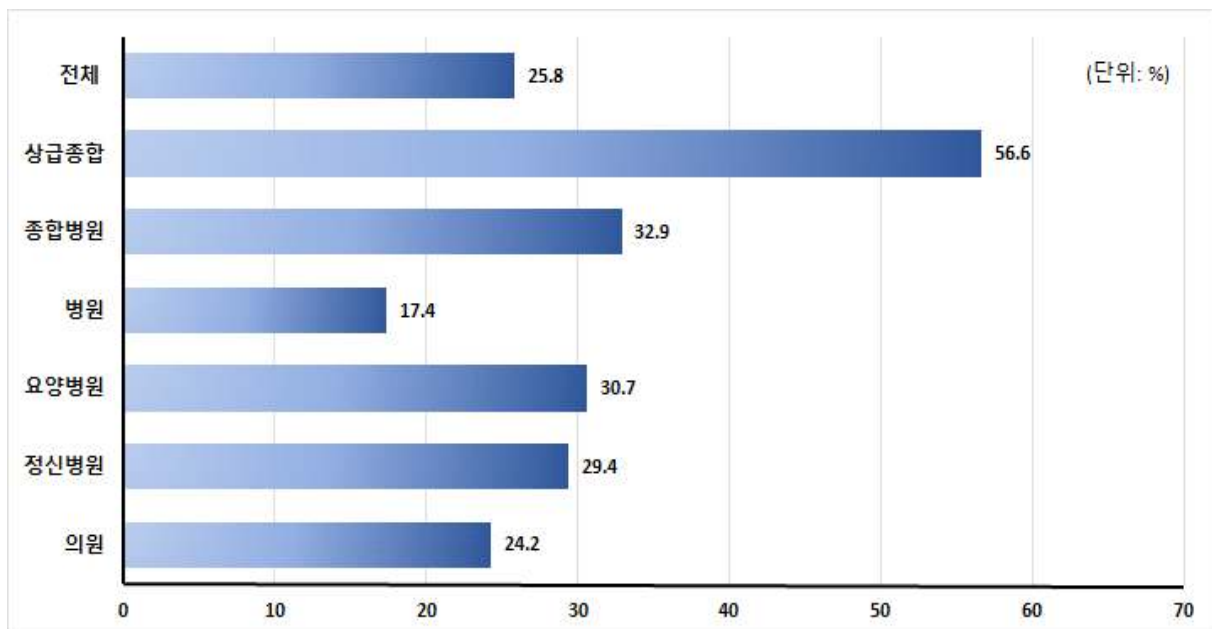
〈표 17 :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구분	항우울제 처방 대상 ¹⁾		84일 이상 처방 지속 ²⁾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기관	환자 수	기관	환자 수	
전체	4,050	359,063	3,284	92,770	25.8
상급종합	45	7,968	45	4,511	56.6
종합병원	290	39,283	288	12,917	32.9
병원	323	14,505	276	2,524	17.4
요양병원	19	349	16	107	30.7
정신병원	168	14,412	168	4,237	29.4
의원	3,205	282,546	2,491	68,474	24.2

(단위: 개소, 명, %)

주) 1.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중 항우울제를 처방 받은 환자

2. 항우울제 첫 처방일 다음날로부터 114일 이내(총 115일 동안) 항우울제 처방일수의 합이 84일 이상.[붙임1]참조



〈그림 9 :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 기관별 평균은 21.2%이며 중앙값은 19.3%임

- 상급종합병원(60.8%) > 요양병원(34.7%) > 종합병원(34.0%) 순으로 높으며, 표준편차는 요양병원($\pm 25.8\%$)이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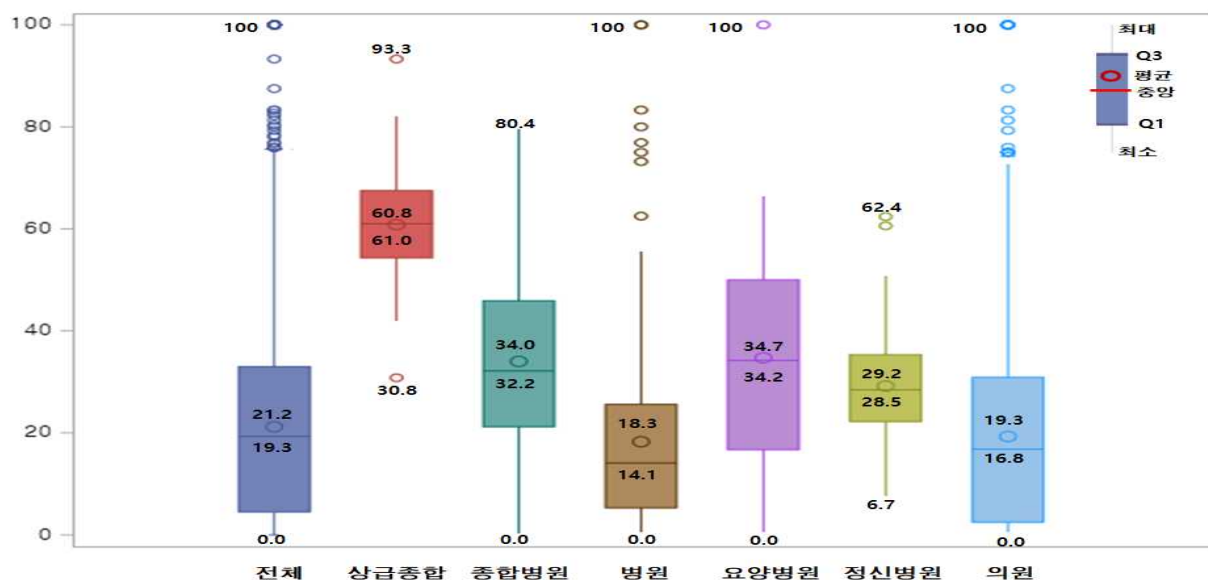
<표 18 :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기관별 분포>

(단위: 개소, 명, %)

구분	항우울제 처방 대상 ¹⁾		84일 이상 처방 ²⁾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기관별 분포						
	기관	환자 수	기관	환자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Q1	중앙값	Q3	최대값
전체	4,050	359,063	3,284	92,770	21.2	18.5	0.0	4.5	19.3	33.0	100.0
상급종합	45	7,968	45	4,511	60.8	11.9	30.8	54.3	61.0	67.5	93.3
종합병원	290	39,283	288	12,917	34.0	17.1	0.0	21.2	32.2	45.9	80.4
병원	323	14,505	276	2,524	18.3	17.2	0.0	5.3	14.1	25.6	100.0
요양병원	19	349	16	107	34.7	25.8	0.0	16.7	34.2	50.0	100.0
정신병원	168	14,412	168	4,237	29.2	9.6	6.7	22.2	28.5	35.4	62.4
의원	3,205	282,546	2,491	68,474	19.3	17.8	0.0	2.5	16.8	30.9	100.0

주) 1.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중 항우울제를 처방 받은 환자

2. 항우울제 첫 처방일 다음날로부터 114일 이내(총 115일 동안) 항우울제 처방일수의 합이 84일 이상.[붙임1]참조



<그림 10 :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기관별 분포>

[지표 6]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정의	항우울제를 180일 이상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 비율
산출식	$\frac{180\text{일 이상 항우울제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수}}{\text{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신규 외래 환자수}} \times 100$ * (항우울제 180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날로부터 231일 이내(총232일 동안)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투여일수 합이 180일(6개월 이상)

○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은 전체 16.4%(예비평가 : 14.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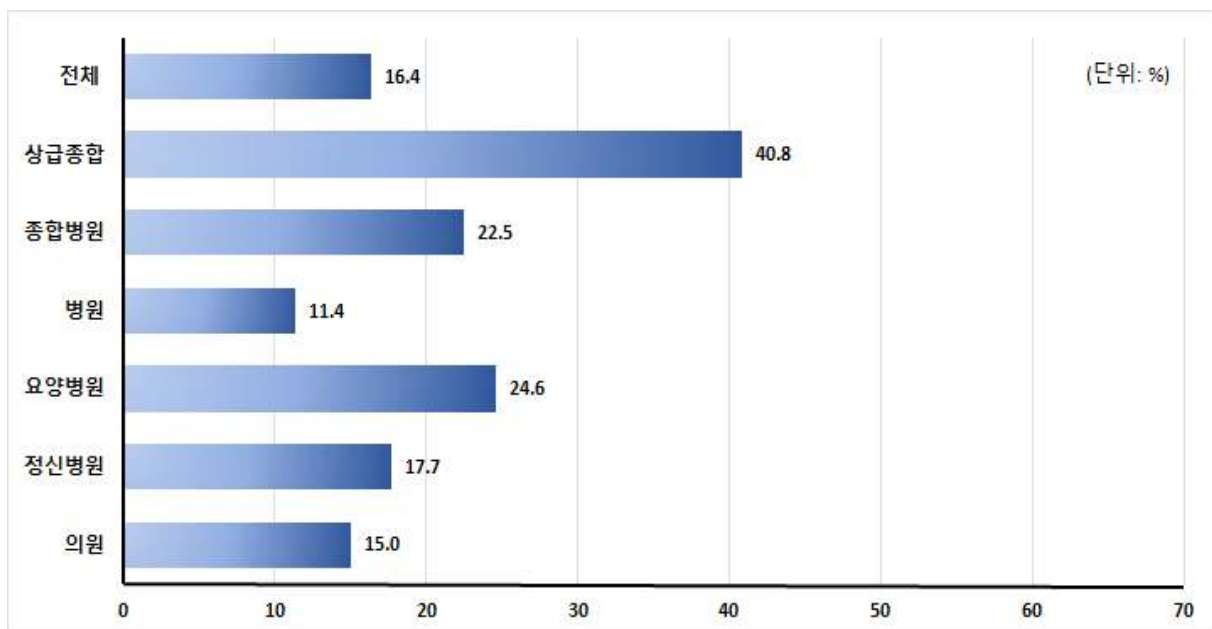
- 상급종합병원(40.8%) > 요양병원(24.6%) > 종합병원(22.5%) > 순으로 높음

〈표 19 :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구분	항우울제 처방 대상 ¹⁾		180일 이상 처방 지속 ²⁾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기관	환자 수	기관	환자 수	
전체	4,050	359,063	2,955	58,751	16.4
상급종합	45	7,968	45	3,251	40.8
종합병원	290	39,283	285	8,854	22.5
병원	323	14,505	236	1,656	11.4
요양병원	19	349	15	86	24.6
정신병원	168	14,412	164	2,555	17.7
의원	3,205	282,546	2,210	42,349	15.0

주) 1.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중 항우울제 처방 받은 환자

2. 항우울제 첫 처방일 다음날로부터 231일 이내(총 232일 동안) 항우울제 처방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붙임1] 참조



〈그림 11 :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 기관별 평균은 13.3%이며 중앙값은 10.7%임

- 상급종합병원(44.3%) > 요양병원(27.0%) > 종합병원(23.3%) 순으로 높으며, 표준편차는 요양병원($\pm 25.4\%$)이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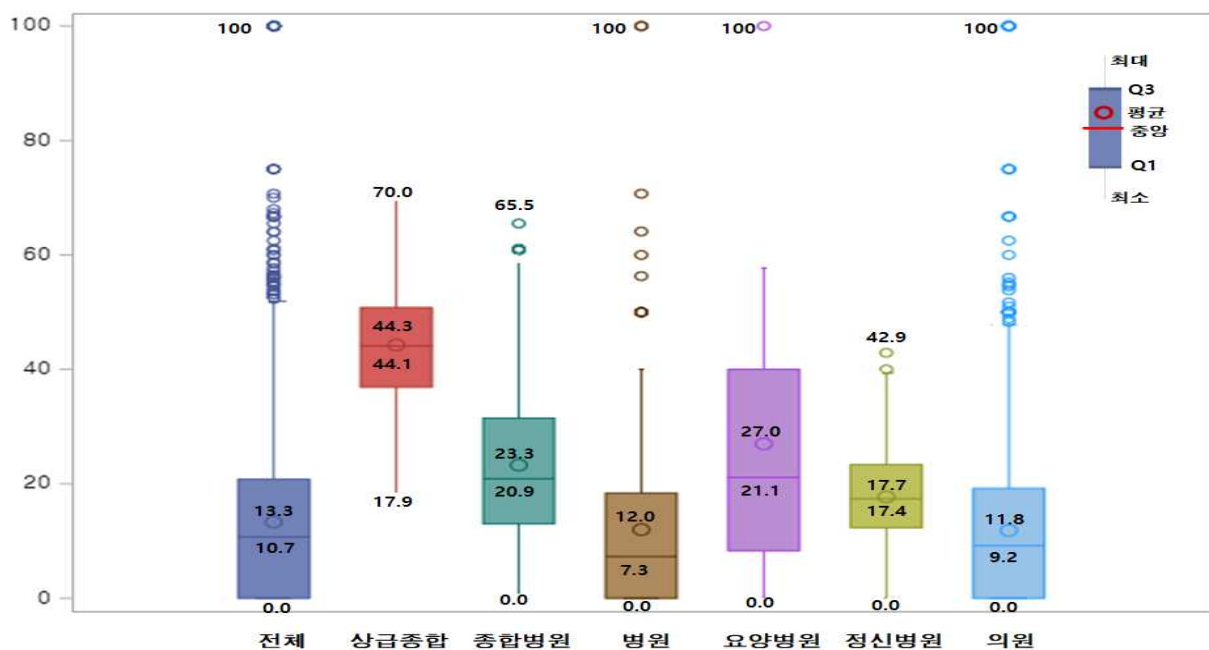
〈표 20 :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기관별 분포〉

(단위: 개소, 명, %)

구분	항우울제 처방 대상 ¹⁾		180일 이상 처방 ²⁾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기관별 분포						
	기관	환자수	기관	환자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Q1	중앙값	Q3	최대값
전체 ¹⁾	4,050	359,063	2,955	58,751	13.3	14.0	0.0	0.0	10.7	20.8	100.0
상급종합병원	45	7,968	45	3,251	44.3	11.5	17.9	36.9	44.1	50.8	70.0
종합병원	290	39,283	285	8,854	23.3	13.9	0.0	13.0	20.9	31.5	65.5
병원	323	14,505	236	1,656	12.0	14.6	0.0	0.0	7.3	18.4	100.0
요양병원	19	349	15	86	27.0	25.4	0.0	8.3	21.1	40.0	100.0
정신병원	168	14,412	164	2,555	17.7	8.3	0.0	12.4	17.4	23.4	42.9
의원	3,205	282,546	2,210	42,349	11.8	13.2	0.0	0.0	9.2	19.2	100.0

주) 1.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중 항우울제 처방 받은 환자

2. 항우울제 첫 처방일 다음날로부터 231일 이내(총 232일 동안) 항우울제 처방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붙임1] 참조



〈그림 12: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기관별 분포〉

3.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가. 종합점수

- 지표별 (분모)건수 최소 1건 이상인 경우 지표값 산출
- 지표 특성 및 분포를 고려하여 지표값을 기준으로 5구간 설정 후 점수부여(1~5점 표준화)
- 지표별 표준화 점수 및 가중치

(단위: %)

구분		지표명	가중치
평가지표	과정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을	3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을	2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3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2

- 결과 산출된 지표수가 3개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별 가중치 적용하여 종합점수 산출

※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에서 초기평가 미시행으로 분모건수가 없는 경우 ‘0’ 점 적용

$$\text{종합점수} = \frac{\sum \{(\text{평가지표별 표준화 점수} / 5) \times \text{지표별 가중치}\}}{\text{가중치의 합}}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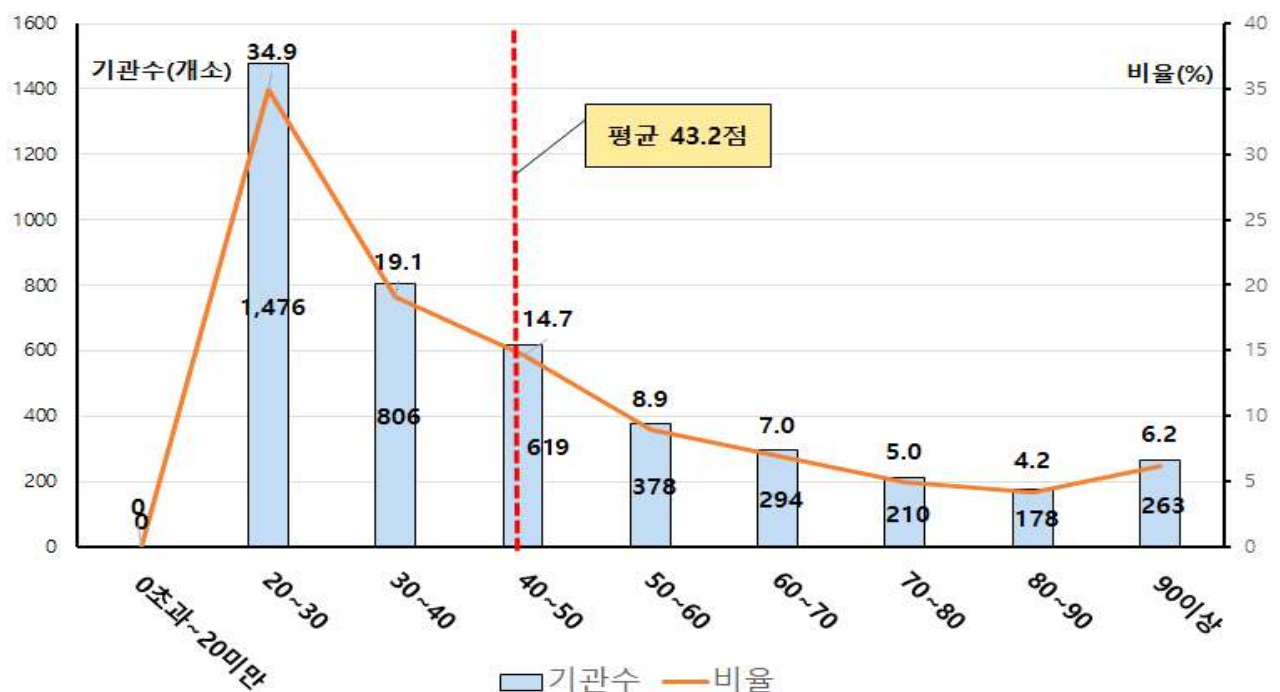
○ 종합점수 산출 결과

- 종합점수 평균은 43.2(±22.3)점이며, 상급종합병원 64.0점으로 가장 높고
요양병원은 30.6점으로 가장 낮음

〈표 21 : 종합점수 기관별 분포〉

(단위:개소, 점)

구분	기관별 분포							
	대상기관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Q1	중앙값	Q3	최댓값
전체	4,224	43.2	22.3	20.0	26.0	36.0	56.0	100.0
상급종합	45	64.0	20.7	26.0	46.0	64.0	84.0	100.0
종합병원	290	42.9	18.3	20.0	30.0	38.0	50.0	100.0
병원	328	31.4	9.5	20.0	26.0	30.0	36.0	72.0
요양병원	19	30.6	10.8	20.0	26.0	26.0	36.0	64.0
정신병원	168	48.6	12.7	26.0	40.0	46.0	56.0	86.0
의원	3,374	43.9	23.4	20.0	26.0	36.0	58.0	100.0



〈그림 13 : 종합점수 분포 현황〉

나. 평가등급

○ 등급기준

- 종합점수 기관별 **평균을 등급의 중앙인 3등급** 구간에 위치, 기관별 분포를 고려하여, 15점 간격으로 5개 구간 설정

등급	종합점수
①등급	70점 이상
②등급	55점 이상~70점 미만
③등급	40점 이상~55점 미만
④등급	25점 이상~40점 미만
⑤등급	25점 미만
등급제외	없음

○ 평가등급 현황

- 1등급은 651개소(15.4%) 5등급은 710개소(16.8%)임

〈표 22 : 종별 평가등급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대상기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전체	4,224 (100.0)	45 (100.0)	290 (100.0)	328 (100.0)	19 (100.0)	168 (100.0)	3,374 (100.0)
1등급	651 (15.4)	18 (40.0)	30 (10.3)	2 (0.7)	0 (0.0)	12 (7.2)	589 (17.5)
2등급	461 (10.9)	10 (22.2)	29 (10.0)	8 (2.4)	1 (5.2)	39 (23.2)	374 (11.1)
3등급	830 (19.7)	11 (24.4)	77 (26.6)	46 (14.0)	2 (10.5)	83 (49.4)	611 (18.1)
4등급	1,572 (37.2)	6 (13.4)	142 (49.0)	230 (70.1)	12 (63.2)	34 (20.2)	1,148 (34.0)
5등급	710 (16.8)	0 (0.0)	12 (4.1)	42 (12.8)	4 (21.1)	0 (0.0)	652 (19.3)

○ 평가등급별 종별 현황

- 의원 3,374개소 중 1등급 기관이 589개소이며 전체 1등급 기관 651개소 중 90.5%를 차지함

〈표 23 : 평가등급별 종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대상기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전체	4,224 (100.0)	45 (1.1)	290 (6.9)	328 (7.8)	19 (0.4)	168 (4.0)	3,374 (79.9)
1등급	651 (100.0)	18 (2.8)	30 (4.6)	2 (0.3)	0 (0.0)	12 (1.8)	589 (90.5)
2등급	461 (100.0)	10 (2.2)	29 (6.3)	8 (1.7)	1 (0.2)	39 (8.5)	374 (81.1)
3등급	830 (100.0)	11 (1.3)	77 (9.3)	46 (5.5)	2 (0.2)	83 (10.0)	611 (73.6)
4등급	1,572 (100.0)	6 (0.4)	142 (9.0)	230 (14.6)	12 (0.8)	34 (2.2)	1,148 (73.0)
5등급	710 (100.0)	0 (0.0)	12 (1.7)	42 (5.9)	4 (0.6)	0 (0.0)	652 (91.8)

주) 1등급 의원: 정신건강의학과 586개소, 신경과 등 3개소

○ 지역(시도)별 평가등급 현황

- 지역별 1등급 분포는 서울(29.2%) > 경인(16.3%) > 제주(15.4%) 순임
- 서울지역에 1등급 272개소(29.2%)로 가장 높고, 이 중 의원이 253개소 (93.0%)임

※ 시도별 · 종별 평가등급 현황 [붙임 2]참조

〈표 24 : 지역별 평가등급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대상기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체	4,224 (100.0)	651 (15.4)	461 (10.9)	830 (19.6)	1,572 (37.2)	710 (16.8)
서울	933 (100.0)	272 (29.2)	111 (11.9)	156 (16.7)	257 (27.5)	137 (14.7)
경인	1,082 (100.0)	176 (16.3)	125 (11.6)	204 (18.9)	371 (34.3)	206 (19.0)
강원	116 (100.0)	5 (4.3)	14 (12.1)	18 (15.5)	56 (48.3)	23 (19.8)
충청	475 (100.0)	44 (9.3)	39 (8.2)	115 (24.2)	183 (38.5)	94 (19.8)
전라	517 (100.0)	43 (8.3)	45 (8.7)	103 (19.9)	248 (48.0)	78 (15.1)
경상	1,049 (100.0)	103 (9.8)	121 (11.5)	223 (21.3)	440 (41.9)	162 (15.4)
제주	52 (100.0)	8 (15.4)	6 (11.5)	11 (21.2)	17 (32.7)	10 (19.2)

〈표 25 : 시도별 의원 평가등급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대상기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의원 전체		3,374	(100.0)	589	(17.5)	374	(11.1)	611	(18.1)	1,148	(34.0)	652	(19.3)
서울		815	(100.0)	253	(31.0)	101	(12.4)	131	(16.1)	202	(24.8)	128	(15.7)
경인	경기	729	(100.0)	134	(18.4)	82	(11.2)	117	(16.0)	234	(32.1)	162	(22.2)
	인천	130	(100.0)	19	(14.6)	15	(11.5)	21	(16.2)	43	(33.1)	32	(24.6)
강원		91	(100.0)	5	(5.5)	10	(11.0)	11	(12.1)	46	(50.5)	19	(20.9)
충청	충북	110	(100.0)	7	(6.4)	5	(4.5)	22	(20.0)	45	(40.9)	31	(28.2)
	충남	129	(100.0)	8	(6.2)	6	(4.7)	30	(23.3)	56	(43.4)	29	(22.5)
	대전	121	(100.0)	18	(14.9)	14	(11.6)	38	(31.4)	27	(22.3)	24	(19.8)
	세종	21	(100.0)	4	(19.0)	4	(19.0)	3	(14.3)	4	(19.0)	6	(28.6)
전라	전북	168	(100.0)	18	(10.7)	15	(8.9)	29	(17.3)	75	(44.6)	31	(18.5)
	전남	128	(100.0)	8	(6.3)	4	(3.1)	20	(15.6)	71	(55.5)	25	(19.5)
	광주	99	(100.0)	15	(15.2)	12	(12.1)	26	(26.3)	32	(32.3)	14	(14.1)
경상	경북	158	(100.0)	5	(3.2)	8	(5.1)	32	(20.3)	82	(51.9)	31	(19.6)
	경남	161	(100.0)	12	(7.5)	16	(9.9)	33	(20.5)	64	(39.8)	36	(22.4)
	부산	230	(100.0)	47	(20.4)	42	(18.3)	45	(19.6)	61	(26.5)	35	(15.2)
	대구	194	(100.0)	26	(13.4)	26	(13.4)	37	(19.1)	73	(37.6)	32	(16.5)
	울산	46	(100.0)	3	(6.5)	9	(19.6)	8	(17.4)	19	(41.3)	7	(15.2)
제주		44	(100.0)	7	(15.9)	5	(11.4)	8	(18.2)	14	(31.8)	10	(22.7)

4. 평가결과 공개(안)

가. 공개 방향

- 국민과 기관이 평가결과를 이해하기 쉽고 활용이 용이하도록 종합 점수를 5등급으로 공개
-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과 요양기관의 벤치마킹 자료제공을 위하여 기관별 종합결과, 지표별 결과 및 전체 평균값 제공

나. 공개 방법 및 내용

- 국민
 - (목적)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 보장
 - (방법) 우리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 평가정보 > 평가항목 > 우울증 외래
 - (내용) 기관별 평가등급 및 평가지표 결과
- 요양기관
 - (목적) 요양기관의 자율적 의료질 향상 도모
 - (방법)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조회, 서면 통보서 발송
 - (내용) 평가대상 전체 기관에게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 기관별 지표 결과값, 전체 및 동일 종별의 평균값 등 결과 제공

※ 전산통보 신청 기관에 한해서 조회·출력 가능

다. 평가결과 활용

- (요양기관) 자율적 질 향상을 위한 평가결과 통보
 -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평가결과 및 비교정보 제공, 질 향상 지원
- (대국민) 평가결과 대국민 홍보 및 공개
- (정부 및 유관기관) 관련 업무에 활용토록 평가결과 제공
 - 우울증 관련 정부 정책결정 기초자료 활용
 - 관련 단체·학회 등에서 소속회원 질 향상 활동 및 진료지침 마련 등 기초자료 활용

II. 향후 추진계획

1. 1차 평가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 등

- ('22. 10.)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 (국민 대상)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기관별 평가등급 공개
 - (요양기관 대상) 기관별 평가등급(1~5등급) 및 평가지표 결과값, 지표별 전체 및 동일종별 결과 등 비교 정보 제공(서면, e-평가시스템)
- ('22. 11.~) 이의신청 처리 및 질 향상 지원활동
 - (대상) 평가결과 하위 기관
 - (방법) 맞춤형 서면 안내문, 대면 및 유선 안내 등
 - (내용) 기관별 평가결과 및 지표 향상을 위한 주요 정보제공, 평가 세부기준 및 임상진료 권고사항 안내 등

2.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추진

- ('22. 10.)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22. 11.) 요양기관 설명회(비대면 예정)
- 초기 평가 결과 활용하여 우울증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홍보 활동(카드 뉴스 제작, 심평원 블로그 게재 등)
- 3차 평가 계획 수립 전 평가지표 기준 정비, 지표별 목표설정 및 종합점수 산출기준 등 검토·논의 예정

※ 향후 일정 및 수행 내용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지표 1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을
정 의	첫 방문 후 3주 이내 외래에 재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 우울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정신요법 치료로 나뉘는데, 약물 치료는 초기 단계적 증량 및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효과나 약물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며, 정신치료는 치료 초기에 빈도를 높일수록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됨 - 초기 치료의 반응에 따라 관해에 이르는 비율이 달라지므로 항우울제 최초 처방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초기 치료 반응과 부작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약물 조정 필요
산출식	$\frac{\text{첫 방문 후 3주 이내에 외래 재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text{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times 100$
세부 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 (첫 방문) 우울증 상병으로 평가대상 기간 내 처음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재방문) 첫 방문 다음날부터 3주(21일) 이내 우울증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 외래를 방문하여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이 이루어진 경우 • (항우울제) 건강보험 약가 등재 항우울제^{주)} - Citalopram, Escitalopram, Fluoxetine, Fluvoxamine, Paroxetine, Sertraline, Desvenlafaxine, Duloxetine, Milnacipran, Venlafaxine, Moclobemide, Amitriptyline, Amoxapine, Clomipramine, Doxepin, Imipramine, Nortriptyline, Agomelatine, Bupropion, Mirtazapine, Tianeptine, Trazodone, Vortioxetine, Hypericin herba • (정신요법)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정신요법 ① 개인정신치료: (NN001) 개인정신치료 I, (NN002) 개인정신치료II, (NN003) 개인정신치료III, (NN004) 개인정신치료IV, (NN005) 개인정신치료V ② 집단정신치료: (NN021) 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 (NN022) 역동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 (NN023) 정신치료극 ③ 가족치료: (NN031) 개인, (NN032) 집단 ④ 작업 및 오락요법 (NN040) ⑤ 약물이용면담 (NN050) ⑥ 인지행동치료: (NN061) 개인, (NN062) 집단 ⑦ 전기충격요법: (NN071) 일반전기충격요법, (NN072) 특수전기충격요법 ⑧ 지속적 수면요법: (NN081) 전기, (NN082) 약물, (NN083) 마취 ⑨ 정신의학적재활요법(NN090) ⑩ 정신의학적응급처치(NN100) ⑪ 정신의학적사회사업: (NN111) 개인력조사, (NN112) 사회사업지도, (NN113) 사회조사, (NN114) 가정방문
제외 기준	평가대상 제외환자
자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지표 운용	평가지표

주) WHO ATC코드 N06A(Antidepressant Drugs)에서 건강보험 약가 등재된 약제 중 식약처 허가사항이 '우울' 인 약제

지표 2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	-------------------------------

정 의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외래에 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 초기의 단계적 항우울제 증량 및 약물의 부작용 관리가 향후 약물순응도 및 치료효과에 영향을 주며 정신치료도 초기 횟수를 높여야 우울증상 개선에 효과적임 • 또한, 치료 초기에 정기적인 자살 위험성의 모니터링 필요
산출식	$\frac{\text{첫 방문 후 8주 이내에 3회 이상 외래 방문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text{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times 100$
세부 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 (첫 방문) 우울증 상병으로 평가대상 기간 내 처음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3회 이상 방문) 첫 방문 다음날부터 8주(56일) 이내 우울증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처방 및/또는 정신요법이 이루어진 외래 방문이 3회 이상인 경우 • (항우울제) 건강보험 약가 등재 항우울제^{주)} - Citalopram, Escitalopram, Fluoxetine, Fluvoxamine, Paroxetine, Sertraline, Desvenlafaxine, Duloxetine, Milnacipran, Venlafaxine, Moclobemide, Amitriptyline, Amoxapine, Clomipramine, Doxepin, Imipramine, Nortriptyline, Agomelatine, Bupropion, Mirtazapine, Tianeptine, Trazodone, Vortioxetine, Hypericin herba • (정신요법)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정신요법 ① 개인정신치료: (NN001) 개인정신치료 I, (NN002) 개인정신치료II, (NN003) 개인정신치료III, (NN004) 개인정신치료IV, (NN005) 개인정신치료V ② 집단정신치료: (NN021) 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 (NN022) 역동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 (NN023) 정신치료극 ③ 가족치료: (NN031) 개인, (NN032) 집단 ④ 작업 및 오락요법 (NN040) ⑤ 약물이용면담 (NN050) ⑥ 인지행동치료: (NN061) 개인, (NN062) 집단 ⑦ 전기충격요법: (NN071) 일반전기충격요법, (NN072) 특수전기충격요법 ⑧ 지속적 수면요법: (NN081) 전기, (NN082) 약물, (NN083) 마취 ⑨ 정신의학적재활요법(NN090) ⑩ 정신의학적응급처치(NN100) ⑪ 정신의학적사회사업: (NN111) 개인력조사, (NN112) 사회사업지도, (NN113) 사회조사, (NN114) 가정방문
제외 기준	평가대상 제외환자
자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지표 운용	평가지표

주) WHO ATC코드 N06A(Antidepressant Drugs)에서 건강보험 약가 등재된 약제 중 식약처 허가사항이 ‘우울’ 인 약제

지표 3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	----------------------

정 의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 우울증 초기에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우울증의 심각도와 공존질환, 치료예후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우울증 치료가 될 수 있음 - 치료 후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이용한 재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치료 정도를 확인 가능
산출식	$\frac{\text{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text{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times 100$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초기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외래 첫 방문한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 (우울증상평가척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우울증상평가척도^{주)} - Levle I(수가코드: FY751): PHQ-9 우울척도, 에딘버그 산후우울 척도 EPDS - Levle II(수가코드: FY752): 벡 우울평가 BDI, 노인 우울척도 GDS,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 QIDS, 반추적 반응 척도 RRS,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지역사회 역학조사용 우울척도 CES-D - Levle III(수가코드: FY753): 헤밀톤 우울검사 HDRS,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 서울신경심리검사 SNSB(수가코드 FB001)
제외 기준	평가대상 제외환자
자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지표 운용	평가지표

주) 2020. 8. 1.부터 고시(행위) 개정

지표 4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	---------------------

정 의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 후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우울증 치료에서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며 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함
산출식	$\frac{\text{분모 대상 중 우울증상을 재평가한 환자 수}}{\text{우울증상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증상을 초기에 평가한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times 100$
세부 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 (초기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외래 첫 방문한 날부터 1개월(30일) 이내 • (재평가 시기) 우울증 상병으로 초기평가 한 날부터 2주 이후(15일)~ 첫 방문한 날부터 4개월(120일) 이내 • (우울증상평가척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우울증상평가척도^{주)} - Level I(수가코드: FY751): PHQ-9 우울척도, 에딘버그 산후우울 척도 EPDS - Level II(수가코드: FY752): 벡 우울평가 BDI, 노인 우울척도 GDS,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 QIDS, 반추적 반응 척도 RRS, 병원 불안-우울 척도 HADS, 지역사회 역학조사용 우울척도 CES-D - Level III(수가코드: FY753): 헤밀톤 우울검사 HDRS,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 IDS, 코넬치매우울척도 CSDD - 서울신경심리검사 SNSB(수가코드 FB001)
제외 기준	평가대상 제외환자
자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지표 운용	평가지표

주) 2020. 8. 1.부터 고시(행위) 개정

지표 5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정 의	항우울제를 84일 이상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급성기 우울증 치료의 목표인 관해에 이르기 위한 급성기 치료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항우울제의 초기 반응을 위한 지속 복용 필요
산출식	$\frac{\text{84일 이상 항우울제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text{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times 100$
세부 기준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 (항우울제 84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날부터 114일 이내(총 115일 동안)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투여일수 합이 84일(12주) 이상 • (항우울제) 건강보험 약가 등재 항우울제^{주)} - Citalopram, Escitalopram, Fluoxetine, Fluvoxamine, Paroxetine, Sertraline, Desvenlafaxine, Duloxetine, Milnacipran, Venlafaxine, Moclobemide, Amitriptyline, Amoxapine, Clomipramine, Doxepin, Imipramine, Nortriptyline, Agomelatine, Bupropion, Mirtazapine, Tianeptine, Trazodone, Vortioxetine, Hypericin herba
제외 기준	평가대상 제외환자
자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지표 운용	모니터링지표

주) WHO ATC코드 N06A(Antidepressant Drugs)에서 건강보험 약가 등재된 약제 중 식약처 허가사항이 ‘우울’ 인 약제

지표 6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	----------------------------

정 의	항우울제를 180일 이상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비율
선정 근거	- 우울증의 통상적인 1회 삽화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대부분의 임상진료 지침에서 유지치료 기간을 6개월 정도 권장함 - 급성기 우울삽화의 증상 호전, 재발없는 관해 및 회복을 위하여 6-12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가 필요함. 180일 이상 항우울제 치료를 지속한 환자일수록 재발률이 낮아지거나 사회적 기능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짐
산출식	$\frac{\text{180일 이상 항우울제 지속 처방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text{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수}} \times 100$
세부 기준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우울증 상병이 있는 환자에서 평가대상 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항우울제 180일 이상 지속 처방) 우울증 외래 환자의 항우울제 첫 처방 다음 날부터 231일 이내(총 232일 동안) 동일 요양기관에서 항우울제 총 투여일수 합이 180일(6개월) 이상 (항우울제) 건강보험 약가 등재 항우울제^{주)} - Citalopram, Escitalopram, Fluoxetine, Fluvoxamine, Paroxetine, Sertraline, Desvenlafaxine, Duloxetine, Milnacipran, Venlafaxine, Moclobemide, Amitriptyline, Amoxapine, Clomipramine, Doxepin, Imipramine, Nortriptyline, Agomelatine, Bupropion, Mirtazapine, Tianeptine, Trazodone, Vortioxetine, Hypericin herba
제외 기준	평가대상 제외환자
자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지표 운용	모니터링지표

주) WHO ATC코드 N06A(Antidepressant Drugs)에서 건강보험 약가 등재된 약제 중 식약처 허가사항이 ‘우울’ 인 약제

[붙임 2]

시도별 · 종별 평가등급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대상기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체		4,224 (100.0)	651 (15.4)	461 (10.9)	830 (19.6)	1,572 (37.2)	710 (16.8)
서울	소계	933 (100.0)	272 (100.0)	111 (100.0)	156 (100.0)	257 (100.0)	137 (100.0)
	상급종합	14 (1.5)	7 (2.6)	4 (3.6)	2 (1.3)	1 (0.4)	.
	종합병원	37 (4.0)	10 (3.7)	4 (3.6)	8 (5.1)	15 (5.8)	.
	병원	54 (5.8)	1 (0.4)	.	6 (3.8)	39 (15.2)	8 (5.8)
	요양병원	1 (0.1)	.	.	.	.	1 (0.7)
	정신병원	12 (1.3)	1 (0.4)	2 (1.8)	9 (5.8)	.	.
	의원	815 (87.4)	253 (93.0)	101 (91.0)	131 (84.0)	202 (78.6)	128 (93.4)
경인	소계	1,082 (100.0)	176 (100.0)	125 (100.0)	204 (100.0)	371 (100.0)	206 (100.0)
	상급종합	8 (0.7)	6 (3.4)	1 (0.8)	1 (0.5)	.	.
	종합병원	75 (6.9)	11 (6.3)	8 (6.4)	23 (11.3)	30 (8.1)	3 (1.5)
	병원	84 (7.8)	.	7 (5.6)	15 (7.4)	55 (14.8)	7 (3.4)
	요양병원	8 (0.7)	.	1 (0.8)	1 (0.5)	4 (1.1)	2 (1.0)
	정신병원	48 (4.4)	6 (3.4)	11 (8.8)	26 (12.7)	5 (1.3)	.
	의원	859 (79.4)	153 (86.9)	97 (77.6)	138 (67.6)	277 (74.7)	194 (94.2)
강원	소계	116 (100.0)	5 (100.0)	14 (100.0)	18 (100.0)	56 (100.0)	23 (100.0)
	상급종합	2 (1.7)	.	.	1 (5.6)	1 (1.8)	.
	종합병원	13 (11.2)	.	.	3 (16.7)	8 (14.3)	2 (8.7)
	병원	4 (3.4)	.	.	1 (5.6)	1 (1.8)	2 (8.7)
	요양병원	.	.	.	.	.	.
	정신병원	6 (5.2)	.	4 (28.6)	2 (11.1)	.	.
	의원	91 (78.4)	5 (100.0)	10 (71.4)	11 (61.1)	46 (82.1)	19 (82.6)
충청	소계	475 (100.0)	44 (100.0)	39 (100.0)	115 (100.0)	183 (100.0)	94 (100.0)
	상급종합	4 (0.8)	2 (4.5)	.	1 (0.9)	1 (0.5)	.
	종합병원	32 (6.7)	3 (6.8)	6 (15.4)	9 (7.8)	13 (7.1)	1 (1.1)
	병원	32 (6.7)	1 (2.3)	.	3 (2.6)	25 (13.7)	3 (3.2)
	요양병원	4 (0.8)	0 (0.0)	.	.	4 (2.2)	.
	정신병원	22 (4.6)	1 (2.3)	4 (10.3)	9 (7.8)	8 (4.4)	.
	의원	381 (80.2)	37 (84.1)	29 (74.4)	93 (80.9)	132 (72.1)	90 (95.7)
전라	소계	517 (100.0)	43 (100.0)	45 (100.0)	103 (100.0)	248 (100.0)	78 (100.0)
	상급종합	5 (1.0)	1 (2.3)	3 (6.7)	.	1 (0.4)	.
	종합병원	48 (9.3)	1 (2.3)	6 (13.3)	10 (9.7)	30 (12.1)	1 (1.3)
	병원	53 (10.3)	.	1 (2.2)	9 (8.7)	36 (14.5)	7 (9.0)
	요양병원	.	.	.	.	.	.
	정신병원	16 (3.1)	.	4 (8.9)	9 (8.7)	3 (1.2)	.
	의원	395 (76.4)	41 (95.3)	31 (68.9)	75 (72.8)	178 (71.8)	70 (89.7)
경상	소계	1,049 (100.0)	103 (100.0)	121 (100.0)	223 (100.0)	440 (100.0)	162 (100.0)
	상급종합	12 (1.1)	2 (1.9)	2 (1.7)	6 (2.7)	2 (0.5)	.
	종합병원	79 (7.5)	5 (4.9)	4 (3.3)	21 (9.4)	44 (10.0)	5 (3.1)
	병원	100 (9.5)	.	.	12 (5.4)	73 (16.6)	15 (9.3)
	요양병원	6 (0.6)	.	.	1 (0.4)	4 (0.9)	1 (0.6)
	정신병원	63 (6.0)	3 (2.9)	14 (11.6)	28 (12.6)	18 (4.1)	.
	의원	789 (75.2)	93 (90.3)	101 (83.5)	155 (69.5)	299 (68.0)	141 (87.0)
제주	소계	52 (100.0)	8 (100.0)	6 (100.0)	11 (100.0)	17 (100.0)	10 (100.0)
	상급종합	.	.	.	.	.	.
	종합병원	6 (11.5)	.	1 (16.7)	3 (27.3)	2 (11.8)	.
	병원	1 (1.9)	.	.	.	1 (5.9)	.
	요양병원	.	.	.	.	.	.
	정신병원	1 (1.9)	1 (12.5)	.	.	.	.
	의원	44 (84.6)	7 (87.5)	5 (83.3)	8 (72.7)	14 (82.4)	10 (100.0)